2025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위해 경기도 소재 기업과 연계하여 베이비부머의 일경험과 지속적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구인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 신청 이전에 채용된 인원도 지원금 지급에 해당 되나요?

A1. 사업 신청 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대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A2.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한가요?

A3. 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24년 결산 전인데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23년 결산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첨부 하시면 됩니다.

Q5.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채용 시 정규직, 계약직 모두 무관하며, 근로계약서상 인턴십 기간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ex) 인턴십 기간 : 2025. 6. 1. ~ 2025. 8. 30.

Q6. 참여자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저희 사업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하시면 됩니다.

II 참여안내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 ☎ 1555-6525

II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건비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민간 일자리 창출

□ 사업대상

❍ 도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2025년 당해 공고일 기준 40세이상 65세미만(1961년 ~ 1985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고용

□ 사업규모 : 인턴십 채용 900명

❍ 1개 기업 최대 10명 신청 가능

구분	인턴 지원 가능 인원
상시근로자수 0명~4명	2명
상시근로자수 5명~9명	3명
상시근로자수 10명이상	10명

※ 근로자 매칭 인원은 선정 기업 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배정

□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총 360만원 지원 (월 120만원 × 3개월)

□ 모집기간 : 2025. 4. 14. (월) ~ 9. 15. (월) 18시까지

※ 9월 15일 이후 매칭자는 12월 15일까지 근무 기간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 지급

□ 인턴십 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ex) 인턴기간 : `25. 5. 9. 근로시작, `25. 8. 8. 근로기간 종료

□ 근로계약 및 인턴십 운영

❍ 사업참여를 위한 “재단-참여기업”간 약정을 체결, 약정 내용 준수

❍ 참여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개별 체결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주 36시간 ~ 40시간 근로

❍ 20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 외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준수

Ⅳ 모집 개요

□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 대상	**필수 항목에 모두 해당되며, 선택 중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제한 없음 (단, 근로자파견업종으로 외부 파견 업무 부여 시 선정취소 및 환수)**
	❍ **(필수)** 아래 2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등록증 제출) ②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공고일 기준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선택)** 아래 6가지 항목 중 1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①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②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분류상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증 제출)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제출 불가 시 별도 소명) ④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소셜벤처 기업 지원제도 운용 요령에 따라 소셜벤처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소셜벤처 기업 판별통지서) ⑥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반(해당 인증서 또는 설립 신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
참여 제외기업	❍ 아래 참여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③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⑦ 이외 도지사 또는 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여부
- 법 위반 사실 부존재 여부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업자 선정 불가, 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최종 선정

□ 신청방법

❶ 잡아바어플라이 접속(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❷ 통합 회원가입 ⇨ ❸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베이비부머' or '인턴십' or '기업근무형' 입력 후 선택 ⇨ ❹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 ⇨ ❺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우편, 방문, 메일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1)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소재지 확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수 확인
3) 2024년 재무상태표 1부 ⇨ 부채비율 확인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체납 사실 여부
5) 임금체불확인서 ⇨ 체불 사실 여부(첨부파일 확인)
6) 참여기업확약서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첨부파일 확인)
7) 아래 확인서 중 한가지 이상
   - 중견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사회적기업확인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소관분야별 부처 및 기초지자체」 발급
   - 소셜벤처기업 판별 통지서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스퀘어」 발급
   -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확인서 : 광역자치단체 발급
8) 우선매칭 기업 증빙자료(선택사항)

□ 모집 및 선정절차

○ 참여기업 신청 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9월 15일(월)**

○ 선정결과 : 매월 30일(1~15일 접수) 또는 15일(16~30일 접수)

○ **선정절차**

1단계 : 참여신청		2단계 : 자격검증		3단계 : 매칭지원		4단계 : 선정안내
- '25. 4. 14. ~ 9. 15.	▶	소재지, 근로자 수, 기업 유형 등 검증	▶	기본 자격 검증 후 근로자 매칭 (자체 채용 가능)	▶	법 위반 사실 조회 후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검증 등에 의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적격여부 검증 항목(필수) - 필수항목 모두 적합 시 '적격'기업으로 선정

구분	항목
기업 선정 필수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여부**
	임금 체불 여부
	`25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용 여부
	법위반 사실 조회 및 선정 적용 여부 확인
	참여배제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확인 (공고문 확인 必)
	사업 모니터링(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위한 서류 점검(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대장, 출근기록부 확인 등)에 대한 확인 여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는 일자리는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사업의 일자리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을 확인

❍ 효율적인 매칭지원을 위한 참여 기업 정보 추가 수집(선택)

구분	항목
참여기업 정보	부채비율 (100%이하, 101~200%, 201%이상) - 기업 안전도
	정규직 비율 (~80%, 79~60%, 59%~) - 업무 안정성
	중장년(40세이상) 비율(~80%, 79~60%, 59%~) - 사내 적응도
	복지제도 여부 - 셔틀버스, 자율출퇴근제, 구내식당, 기숙사, 기타(입력)
	정규직 전환 또는 장기 근속 가능 여부
우선매칭 대상 기업	`24년 이음일자리, 적합직무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 50%이상
	기존 이음일자리, 적합직무 등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 비율 50%이상
	정부기관 및 경기도 주관 우수·인증기업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 "적격"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자(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매칭이 안 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기준 : 취소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 선정기업 대표, 관계자가 채용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일 경우

* 친척 : 8촌 이내 혈족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 참여신청 배제 대상 기업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지급방식 : 3개월 인턴십 계약 종료 후**

- 인턴십 참여자와 채용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 관계이므로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 인턴십 지원금 지급 신청은 참여기업이 인턴십 종료 후 재단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지급 가능

※ 매월 10일 기준 - 이전 제출 시 검토 후 월말 일괄 지급, 10일 이후 제출 시 다음달 월말 지급

- 중도퇴사 시 근무일 수 일할 정산
- 3개월 인턴십 중 무급휴가 및 산재 발생 시, 해당 월 결근일 일할 계산하여 상계 후 지급

❍ 구비서류 : ①지원금신청서 ②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 ⑥4대보험 가입증명서(3개월 내역) ⑦근로계약서 ⑧멘토링일지 ⑨출근부 ⑩급여명세서 ⑪교육수료증

※ 기본 양식은 제공되며, 근로계약서 등 자체 양식 활용 가능

※ 선정기업 전용 지급신청 접수 시스템 운영

※ 참여자 교육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별도 운영 예정(오프라인 2회)

Ⅴ 기업 의무사항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협조

❍ 인턴십 참여자 업무환경 조성

❍ 멘토링 운영 의무

- 기존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

❍ 참여자 교육 참여에 대한 독려 협조

❍ 기타 인턴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 절차 등 협조

Ⅵ 유의사항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 안내 자료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미숙지에 따른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사업 운영에 따름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미준수 기업 또는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